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2호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7호(2026.1.21.)로 결정(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05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2026. 6. 3.~2026. 6. 17. (14일간)

나. 열람장소: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051-888-4205), 연제구청(건설과 ☎051-665-4724)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도시계획소통>>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열람공고
(<https://www.busan.go.kr/depart/agora>)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안
제11조 (건축물의 형태) ① 구역내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거복합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5/100 이상은 상업·업무 등 2개 이상의 비주거용도(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 (건축물의 형태) 〈삭 제〉 ①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②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기정	변경안
제23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생략) 〈신 설〉	제23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본 지침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작성지침 2-1.(5) 기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군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조정 등 결정권자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변경사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